

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 10일
신청법인	성명	전화번호	
	주소		
대표자 (이사·청산인)	성명	생년월일(외국인등록번호)	
	주소	전화번호	
처분재산	종류 및 수량	금액	
처분방법			
처분사유			

「민법」 제80조제2항 및 「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11조에 따라
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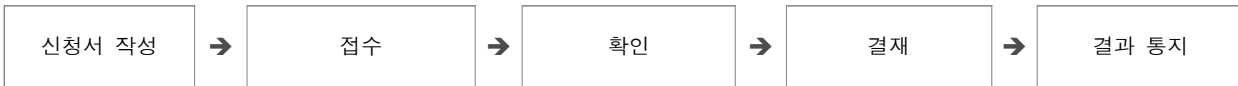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국무조정실장 귀하

첨부서류	1. 해산 당시의 정관 1부(해산신고 시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2.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회의 회의록 1부(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 음
------	--	------------

처 리 절 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: 국무조정실(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)